



명쾌한 수다

‘이유 무죄’시 비용보상 청구와 재량 기각의 가부

이번 시간에는 형사(비용)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판결주문 외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될 경우 비용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에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소개〉

재항고인 A는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81 호로 전처인 B에 대한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자 그 보복의 목적으로 B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보복폭행 등)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B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재항고인 A는 기소된 범죄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비용 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대법원의 판단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관례는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라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잠깐!

형사(비용)보상 제도 목적이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비용보상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관례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와 대법원 2019. 7. 5. 자 2018모906 결정을 통해 ‘이유 무죄’시 비용보상 청구와 재량 기각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